



질병관리청

질 병 관 리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운영 및 계도기간 안내

1. 관련

가. 「의료법」 제37조제3항, 제4항

나.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제2조제3항

2. 위 관련 규정에 따라 `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은 `23.12.31.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, `23년은 시행 첫해이고,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자 `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합니다.

3. 아울러,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을 부여하니, 교육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`23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보수교육 일정>

가. 대상: `23년 보수교육 대상자(`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)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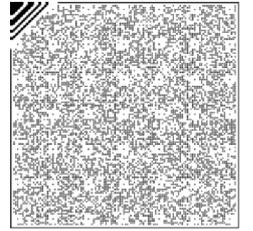
나. 일정: `24.1.14.(일), `24.1.18.(목)

* 교육기관 별 각 2회 추가운영

교육기관 명	한국방사선의학재단	대한영상치의학회
교육대상자	의사, 방사선사	치과의사, 치과위생사
교육홈페이지 (누리집 주소)	www.rs20.or.kr	www.dentalsafeimaging.or.kr
교육일정	`24년 1월 14(일), 18일(목)	`24년 1월 14(일), 18일(목)

※ 위 교육일정 외에 `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으며, 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`23.12.31.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2의2호*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.

*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. 끝.



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(사)대한방사선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

보건연구사 **장재욱** 보건사무관 대결 2024. 1. 5. 의료방사선과 전결
박광자 장

협조자

시행 의료방사선과-86 (2024. 1. 5.) 접수

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의료방사선과 / <http://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512 팩스번호 043-719-7519 / jangjaeuk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